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1,101,862	9,333,056
일반회계		270,607,694	8,118,231
특별회계		40,494,168	1,214,825
공기업특별회계		36,677,437	1,100,323
	상수도공기업	16,301,676	489,050
	하수도공기업	20,375,761	611,273
기타특별회계		3,816,731	114,502
	주택사업	798,000	23,9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000	420
	의료급여기금운영	868,921	26,06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41,694	4,251
	공영개발사업	333,342	10,000
	농공지구조성사업	616,656	18,500
	기반시설	10,000	300
	장기미집행	500,000	15,000
	수질개선	534,118	16,02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05,88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1,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